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

2025. 2. 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라 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학과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을 말한다. 단,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이공계로 분류하여 지원 가능
2. “연구생활장려금”이라 함은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하여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참여대학(이하 “참여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산학협력단 회계 학생지원금(이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어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학생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장학금·장려금 등)을 말한다.
5. “대학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중 대학 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계정을 말한다.
6. “대학계정 잔액 목표”라 함은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일시적 부족상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대학계정의 상시 보유 잔액 목표를 말한다.
7.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외에 이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수급 또는 지급하는 사례를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 사업개시일로부터 2034년 2월 28일까지로 9년으로 한다.

② 단계별 사업기간은 단계 시작연도 3월 1일부터 3개년 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차별 사업기간은 단계별 사업기간 내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선정·평가·관리 또는 제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참여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 전체 교원 (이하 “참여교원”이라 한다) 및 동 사업 지원 대상인 이공계 대학원생 (이하 “지원대학원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참여 주체별 요건 및 책임

제6조(참여대학) ① 참여대학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7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설정한 대학 중 사업에 선정된 대학으로 한다.

② 참여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준수
2. 참여대학 자체 운영규정 및 표준업무절차 제정·운영
3. 대학계정 설정 및 관리
4.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운용·관리
5.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6.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8.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대학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참여대학의 장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조정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참여교원) ① 참여교원은 참여대학 이공계 대학원 전체 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교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원대학원생과의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2.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관리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개발 사업 수주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4.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등을 통한 지원대학원생의 처우개선
5.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6. 지원대학원생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정보 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참여대학의 장은 제2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운영규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조치 결과는 연차 점검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이공계 학과(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대학원생(통합과정생 및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휴학·취업·졸업·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원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생계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산 협동과정생
 6.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하는 사람
- ③ 제2항의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원대학원생이 담당 지도교원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참여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참여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참여대학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지원대상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및 [별표2]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참여대학의 장은 이공계 학과(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⑦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닌다.
1. 연구참여확약서 내 담당 업무 및 역할 수행
 2.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교원 및 대학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3.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를 통해 사전 공지 및 당사자 동의를 얻은 정보 제공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⑧ 참여대학의 장은 제7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우 자체 운영규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조치 결과는 연차점검 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지원대학원생이 제7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8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대학의 장은 해당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운영 및 관리

- 제9조(사업총괄책임자)** ① 참여대학의 사업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 총괄책임자는 참여대학의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운영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참여대학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총괄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참여대학의 장은 인사발령,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사업총괄책임자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해당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추진체계 및 표준업무절차 마련) ① 참여대학의 장은 동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표준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학생별·월별 최저지급액 확인 및 보장 절차
2. 계정별 지급 대상 학생 선정 절차
3.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확인 및 조치 절차
4.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절차
5. 기타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

제11조(대학계정 운영·관리계획 수립) 참여대학의 장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 연도별 대학계정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계정의 당해연도 예상 수입 및 지출 현황
2. 대학계정 자체 재정 기여 계획 및 잔액 목표
3. 하위 기관계정(단과대학, 학과 등) 자원 배분 계획
4. 대학계정 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
5. 기타 대학계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12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운용 계획 수립) 참여대학의 장은 제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 연도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규모
2. 월 기준금액 미만 수급 대학원생 규모 및 기준금액 대비 부족분
3. 하위계정(단과대학, 학과 등) 재원배분 계획
4. 최저지급액 수급 학생 규모 감소 및 학생인건비 전반적 지급 수준
상향 계획

제13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 ① 참여대학의 장은 지원대학원생 중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액이 월 기준금액 이하인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월 기준금액은 석사 학위과정생 월 80만원 이상, 박사 학위과정생 월 110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학원생에게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여교원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잔액(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등)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지급 후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 신규 잔액은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통합 학위과정생의 경우 각 대학 학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구분한다. 단, 학칙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8학기 초과자를 석사 학위과정으로, 석·박사 통합은 4학기 초과자를 박사 학위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대학계정에서 연구생활장려금 등 지급 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5항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생활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별도 지급방안을 수립하여 분기별,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원은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원대학원생과 협의를 거쳐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이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연구 참여확약서 및 참여교원 확인서를 통해 연구활동 사항을 증빙할 수 있다.

⑨ 연구생활장려금은 대학계정에서 지원대학원생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⑩ 참여대학의 장은 지원대학원생이 월 기준금액 미만을 수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⑪ 평가 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인센티브 재원 운용계획 수립 후 지원대학원생 일부에게 인센티브 재원을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대학의 경우, 인센티브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계정에 잔액 목표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 자체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 ① 참여대학의 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 시 대학계정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부지원금과 자체 재정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잔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계정 잔액 목표는 일시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대학은 잔액 목표 설정 시 예비재원 금액과 인센티브 재원의 50%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학계정 잔액 목표 및 달성 여부 등을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통합관리) 참여대학의 장은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 지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명부
2. 매월 재원별·계정별(대학-단과대학-학부(과)-연구책임자)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입·지출·잔액 내역
3. 학부(과) 및 연구책임자 계정별 대학 계정 이관액
4. 월별·지원대학원생별 총 수급 현황(계정별 지급액 포함)
5. 연구생활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액
6.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등 계상액 및 비율 추이

제16조(자체 운영규정 수립) 참여대학의 장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체계
2.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표준업무절차
3. 대학계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운용·관리 방안
4.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 방안
5.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방안
6.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방안
7.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8.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안정적 사업 운영) ① 참여대학의 장은 이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16조제5호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이월적립금을 보유 중인 참여교원 대상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방지 방안
2. 참여교원 연구실 내 지원대학원생이 월 기준금액 부족분에 해당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실 내 기존 대학원생 규모 외 추가 선발 방지 방안
3. 참여교원 연구실 내 전체 지원대학원생들이 월 기준금액 부족분에 해당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실 내 대학원생 정원 과다 선발 방지 방안
4. 참여교원의 수주 연구개발사업 협약 시 학생인건비 축소 계상 방지 방안
5.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연구비 상황 모니터링 및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 관리방안
6.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 노력 해태 등 대학계정 건전성 저해 사례 관리방안
7. 취·창업 및 학적변동 등 전일제 대학원생 변동 여부 등 관리방안
8. 그 밖에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방안

② 참여대학의 장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를 관리·감독 하고, 조치 결과를 연차점검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참여교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될 경우 해당 참여교원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연구

개발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감독)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미흡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조정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9조(추진협의회)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 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체점검) ① 대학은 연 1회 이상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연차점검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1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급 실태,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등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원대상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대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업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조정 및

환수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관련 허위 자료 제출
2.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사항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제22조(컨설팅)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컨설팅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생활 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참여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대학 선정 및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3년 단위의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시행 전 단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대학 선정 및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참여대학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중단 및 동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보고서에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약, 연구개발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결과에 따라 사업총괄책임자에게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총괄책임자가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관련 절차 등을 통해 각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행 전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 참여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조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협약해약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8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 협약해약 시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등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 등의 요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총괄책임자 등의 출석 요구
3. 대학 현장 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참여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제30조(연구개발비 교부) 연구개발비는 참여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 계정) 연구개발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은 대학계정으로, 운영비 재원은 산학

협력단 별도 계정을 통해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32조(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확보, 시스템 정비·운영 등)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참여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동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연구개발비 지출항목)**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에 따른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구개발비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별도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연구개발비 집행관리)** ①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 ② 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집행 시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비 증빙자료는 참여대학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참여대학의 장은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은 사업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동 기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계정에 기한 내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관련 필요한 조치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제36조(정보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대학의 운영 현황, 사업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대학계정 내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산학협력단 및 참여교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원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원대학원생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해석) 법, 영, 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5.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공계열 분야

1. 대계열 및 소계열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2. 대분류 및 소분류

대분류명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소분류코드	소분류명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58	작물·원예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59	산림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60	축산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61	수산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62	농림수산환경생태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63	농림수산바이오시스템공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064	식품가공학
자연과학	06	농림·수산	999	N.C.E
자연과학	07	화학·생명과학·환경	055	화학
자연과학	07	화학·생명과학·환경	056	생명과학
자연과학	07	화학·생명과학·환경	057	환경학
자연과학	07	화학·생명과학·환경	156	바이오테크놀로지학
자연과학	07	화학·생명과학·환경	999	N.C.E
자연과학	08	생활과학	066	식품영양학
자연과학	08	생활과학	067	조리과학
자연과학	08	생활과학	068	의류·의상학
자연과학	08	생활과학	069	주거학
자연과학	08	생활과학	999	N.C.E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048	수학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049	통계학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050	물리학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051	천문·기상학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052	지구과학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053	해양학
자연과학	09	수학·물리·천문·지구	999	N.C.E
자연과학	21	간호	112	간호학
자연과학	22	보건	113	보건학
자연과학	22	보건	114	재활치료
자연과학	22	보건	115	임상보건

대분류명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소분류코드	소분류명
자연과학	22	보건	116	보건관리
자연과학	22	보건	118	피부미용
자연과학	22	보건	163	동물보건
자연과학	22	보건	999	N.C.E
자연과학	23	약학	110	약학
자연과학	23	약학	111	한약학
자연과학	23	약학	999	N.C.E
자연과학	98	교육	070	중등자연과학교육
자연과학	98	교육	117	간호·보건 교육
자연과학	98	교육	999	N.C.E
자연과학	99	N.C.E	071	교양자연과학
자연과학	99	N.C.E	150	의과학
자연과학	99	N.C.E	999	N.C.E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84	전기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85	전자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86	제어계측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87	광학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88	의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89	응용소프트웨어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90	전산학·컴퓨터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091	정보·통신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157	인공지능공학
공학	15	전기·전자·컴퓨터	999	N.C.E
공학	16	건설	072	건축학
공학	16	건설	073	건축공학
공학	16	건설	074	조경학
공학	16	건설	075	토목공학
공학	16	건설	076	도시공학
공학	16	건설	077	환경공학
공학	16	건설	999	N.C.E
공학	17	산업·안전	102	산업공학
공학	17	산업·안전	103	안전공학
공학	17	산업·안전	104	방재공학
공학	17	산업·안전	999	N.C.E
공학	18	재료	092	금속공학
공학	18	재료	093	반도체공학
공학	18	재료	094	신소재공학
공학	18	재료	095	세라믹공학
공학	18	재료	096	재료공학
공학	18	재료	999	N.C.E
공학	19	기계	078	기계공학

대분류명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소분류코드	소분류명
공학	19	기계	079	기전공학
공학	19	기계	080	조선·해양공학
공학	19	기계	081	항공·우주공학
공학	19	기계	082	철도공학
공학	19	기계	083	자동차공학
공학	19	기계	999	N.C.E
공학	20	화공·고분자·에너지	097	화학공학
공학	20	화공·고분자·에너지	098	에너지공학
공학	20	화공·고분자·에너지	099	고분자공학
공학	20	화공·고분자·에너지	100	생명공학
공학	20	화공·고분자·에너지	101	섬유공학
공학	20	화공·고분자·에너지	999	N.C.E
공학	26	교통·수송	158	교통시스템공학
공학	26	교통·수송	159	철도운전제어학
공학	26	교통·수송	160	선박운항학
공학	26	교통·수송	161	항공운항학
공학	26	교통·수송	162	무인항공기(운항)학
공학	98	교육	105	중등공학교육
공학	98	교육	106	교양공학
공학	98	교육	999	N.C.E
공학	99	N.C.E	999	N.C.E

- ※ 계열 간의 연계·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계열 구분
-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 및 '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 상 의예과·치 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는 자연과학계열에 포함가능하나, 동 지침상 의학 계열로 분류
- ※ 단,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별표 2】 사업 지원대학원생 자격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지원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이공계열 소속 재학 중인 대학원생	○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 비참여 학과의 대학원생	○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
2) 전일제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 사업 기간에 취업한 경우 ○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 자침 내 비전일제 학생 예외사항은 제외	○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
3) 연구개발 사업 수행	R&D 사업 또는 용역 과제, 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 * 현재 연구개발·용역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거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 미체결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확인서 미발급	○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전액 환수

※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 자격증/명의 대여 학생은 지원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환수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인 시간강사	○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지원대학원생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인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환수
고등교육법상(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지원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환수
타 프로젝트 참여	사업총괄책임자 승인 없는 연구원 위촉	○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사업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